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35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태호 · 박형수

권영진 • 조지연 • 박덕흠

서천호 · 강명구 · 정동만
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·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.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 급하는 석유류,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·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·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,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민,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5조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용) ①
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	
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	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	
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	
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	
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5년 1</u>	<u>2028년 1</u>
<u>2월 31일</u> 까지 공급한 것에 대	<u> 2월 31일</u>
해서만 적용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